

뉴질랜드에서 비즈니스 하기
Doing Business in New Zealand

뉴질랜드에서 비즈니스 하기

Doing Business in New Zealand

소개

이 가이드북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뉴질랜드에서 비즈니스 하기 가이드는 뉴질랜드 사업이나 벤처사업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투자 전 고려해볼 주요 사항들을 전하고자 준비된 가이드입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투자 전 전반적으로 고려할 만한 정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정보만 가지고 투자 전 요구되는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잠재적 투자자 여러분들이 투자 전 무엇을 고려해야 할지 개략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Anthony Harper

Anthony Harper 는 Auckland 와 Christchurch 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뉴질랜드 최고의 로펌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혁신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뉴질랜드 및 해외 클라이언트들과 함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세간의 주목을 받을만한 일련의 기업 거래를 통하여 많은 찬사를 받아 왔으며, 은행, 재무, 기업, 인수합병, 부동산 및 파산 분야와 관련하여 Asia Pacific Legal 500 지(紙)가 추천하는 로펌이기도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Malcolm Hurley (malcolm.hurley@ah.co.nz) 또는 David Gould (david.gould@ah.co.nz)에게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설립

회사의 구조

뉴질랜드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회사를 세울 수 있습니다.

가장 널리 활용되는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ㄱ) 외국 회사를 위한 지점 설립, 또는
- (ㄴ) 뉴질랜드에 등기된 회사를 설립 (또는 기존 회사를 매수)

2008 년부터 뉴질랜드에 도입된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는 점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회사를 세우기 전 회사의 형태, 사업 영위 방법 또는 다른 소득원을 두는 것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세금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이 상당 수 있습니다. 가령, 세금이 부과되는 활동을 뉴질랜드와 뉴질랜드 이외의 지역에서 동시에 수행한다면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서 복수 국가에서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경우를 피할 수 있습니다.

Anthony Harper 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세금 관련 사항들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세무전문들과 긴밀한 협력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 회사의 지점 설립하기

외국 회사가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1933 Companies Act 에 따라 “외국 회사”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우선 상호(company name)부터 예약해야 합니다. 이는 뉴질랜드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가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해 두기 위한 절차입니다. 신청절차의 일환으로 외국 회사는 등기소에 다음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 (ㄱ) 뉴질랜드 내 주 사업장의 위치 (즉, 지점 위치).
- (ㄴ) 외국 회사 이사들의 이름 및 거주지 주소.
- (ㄷ) 뉴질랜드에 거주하거나 설립되었으며 외국 회사를 대신하여 뉴질랜드에서 문서를 송달 받을 수 있는 자 1인 이상의 이름과 주소.

이와 더불어 (필요한 경우 번역을 한) 외국 회사의 설립을 증명하는 문서 등 회사 설립문서를 함께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호주에 설립된 회사들은 특별히 제외됩니다. 다시 말해, 필요한 서류가 이미 호주 상업등기소에 등기되었을 경우 해당 회사는 뉴질랜드 등기소에 동일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회사가 보냈거나 회사를 대신해서 보낸 모든 서면 교신과 회사가 서명을 한 모든 서류(가령, 서신, 광고자료, 이메일 등)에는 회사의 전체 상호와 회사의 설립 국가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행 중인 자율준수(compliance)와 관련하여 외국 회사는 등기소에 상호를 변경하기에 앞서 등기소에 새로운 상호를 예약해야만 합니다. 나아가 이사, 주 사업장의 장소, 외국 회사의 구성 등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20 영업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등기소에 통지해야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설립된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뉴질랜드에 등기된 외국 회사는 매년 (회사 이사의 주소 등) 회사의 주요 정보를 확인하는 연례보고(Annual Return)를 해야 합니다. 나아가 외국 회사는 등기소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한 재무제표는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전반적으로 뉴질랜드 내 “지점”의 운영 실태와 더불어 뉴질랜드 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 회사의 활동 내역을 다루는 이러한 서류는 감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뉴질랜드에서 새로운 자회사를 설립하는 절차는 간단합니다. 이 절차는 “온라인”상에서 완료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만 제출되면 몇 시간 이내에 신규 회사의 등기 절차는 완료됩니다.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에 따라야 합니다.

- (ㄱ) 상호(회사이름) 예약.
- (ㄴ) 등기된 사무소의 주소 및 송달 주소를 제공 (두 주소는 대개 동일합니다). 신규 회사가 뉴질랜드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solicitor) 또는 회계사가 회사를 대신하여 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ㄷ) 최소한 1 명의 주주, 1 명 이상의 이사를 둬. 이사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지만, 주주는 대개 외국 회사임. 이사는 뉴질랜드 거주자일 필요는 없음 (그러나 뉴질랜드 거주자일 경우 회사의 세법상 거주지(tax residency)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사(들)과 주주(들)은 등기를 위해 각기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채택하는 게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정관을 채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관은 설립과 동시에 또는 향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외국 회사”로 등기된 회사와 마찬가지로 뉴질랜드에 설립된 지점은 매년 등기소에 연례보고를 해야 합니다.

특정한 경우 뉴질랜드에 등기된 기존 회사를 인수하는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기존 회사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ㄱ) 해외투자청(Overseas Investment Office)의 승인이 필요한 지 여부
- (ㄴ) 통상위원회(Commerce Commission)의 승인이 필요한 지 여부
- (ㄷ) 기업인수법(Takeovers Code)이 관련 있는지 여부

위 사항은 뒤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자회사

뉴질랜드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는 2008 합자회사법(Limited Partnerships Act 2008)의 적용을 받습니다.

개별적 법인인 합자회사는 상업등기소에 등기를 하는 것으로 형성됩니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 최소 1 명과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 1 명을 두어야 하지만 (한 사람이 무한책임사원이자 동시에 유한책임사원일 수 없습니다) 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을 최대한 몇 명까지 두도록 정한 상한선은 없습니다. 무한책임사원은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고, 그 반대 경우도 가능합니다.

파트너십 계약

합자회사법에 의거하여 합자회사는 특정 사안들을 규정하는 서면 파트너십 계약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합자회사법상 합자회사는 파트너십계약 조건에 따라 상당히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역할 및 책임 -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은 합자회사의 동인 역할을 하고 일상적인 경영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합자회사에 투자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합자회사가 지불을 하지 못하는 범위에서 합자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무한책임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각 무한책임사원은 연대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보통 유한책임회사를 무한책임사원으로 하여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을 관리하는데, 이 같은 유한책임회사는 아무런 자산도 없고 “거래”도 하지 않습니다.

역할 및 책임 -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은 소극적인 투자자로서 합자회사를 구속할 수 없고 파트너십 경영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파트너십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이 아니라고 분명히 명시된 ‘세이프 하버(safe harbor)’ 활동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각 유한책임사원의 책임은 합자회사를 위하여 각기 출자한 금액만큼 한정됩니다. 그러나 합자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유한책임사원의 경우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지

합자회사의 지속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지속 기간을 정할 경우 파트너십계약에 해지 사유를 첨가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계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해지될 수 있습니다.

- (ㄱ) 파트너십계약에 따라 합자회사의 지속 기간이 종료한 경우
- (ㄴ) 합자회사가 합자회사를 해지하자는 결의를 한 경우
- (ㄷ) 합자회사 내에 10 영업일 이상의 기간 동안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없는 경우
- (ㄹ) 합자회사계약이 소멸한지 10 영업일 이상이 된 경우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합자회사는 청산인 선임을 위한 결의를 하거나, 또는 그 어떠한 책임사원이나, 채권자나, 등기사무관이 해당 합자회사의 청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특정 당사자들은 일정 사유에 따라 합자회사의 등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기

관련 양식을 작성한 후 상업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 합자회사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 후 해당 합자회사의 상호는 합자회사등기부에 나타납니다. 합자회사는 회사와 유사한 행정상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합자회사는 분배를 하기 전에 지급여력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회의 의사록, 책임사원에 관한 내역, 자본계정 및 회계기록을 보관하고, 이름, 주소 및 책임사원들(신규 책임사원 포함)에 관한 변경 사항들은 통지되어야 합니다.

재무제표 및 연례보고도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합자회사법상은 재무제표 및 연례보고를 반드시 감사하거나, 등록하거나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 등록 및 공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한책임사원이 뉴질랜드 내 외국인기업이거나,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하는 해외 기업일 경우, 해당 기업은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합자회사를 비롯한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사업 매수

해외투자 제도

외국인이 증권, 사업체 자산 또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매입하는 행위는 2005 외국인투자법(Overseas Investment Act 2005)에 따라 규율됩니다. 이 제도는 Overseas Investment Office(OIO) 에 의하여 시행됩니다. OIO 와 그 기능에 관한 사항은 www.linz.govt.nz/overseas-investment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다음 각호를 매입하는 경우 해당 매입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OIO 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ㄱ) 민감토지(sensitive land) 또는 민감토지에 대한 권리;
- (ㄴ) 농지;
- (ㄷ) 상당한 사업체 자산; 또는
- (ㄹ) 어획 할당량(fishing quota).

외국인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ㄱ) 뉴질랜드 시민 또는 뉴질랜드 일반 거주자가 아닌 자;
- (ㄴ) 외국인 또는 외국인들의 소유 지분이 25% 이상인 (또는 이와 유사한 요건에 부합하는) 파트너십, 기업체 또는 신탁; 또는
- (ㄷ) 뉴질랜드 외 지역에서 설립된 회사 또는 그 어떠한 종류의 주식에 대한 외국인(들)의 지분이 25% 이상이거나, 회사 이사회에 대한 장악력이 25% 이상이거나, 의결권 25% 이상을 갖거나, 25% 이상의 의결권에 대하여 장악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민감토지 및 농지 매입은 본 가이드 뒤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가이드는 넓은 범위의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가이드로서 어획 할당량은 따로 논의되지 않습니다. 어획 할당량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문의해주시요.

상당량의 사업체 자산의 매입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ㄱ) 외국인이 증권에 대한 권리를 인수하는 경우. 해당 인수에 따라 외국인이 관련 회사 지분 25% 이상을 보유하게 되거나, 관련 회사에 대하여 기존에 보유하던 25% 지분이 더 늘어나거나, 회사 자산의 가치 또는 25% 이상의 자회사 등 회사의 가치가 1 억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ㄴ) 부동산 매입(영업권 및 기타 무형자산 포함). 해당 부동산이 뉴질랜드에 위치하여 있고, 뉴질랜드에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고, 그에 대한 대금이 1 억 뉴질랜드 달러를 초과하여야 한다.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OIO 은 사업수완, 투자의 규모(financial commitment) 및 특징 등과 관련된 투자자 핵심 기준을 바탕으로 해당 신청을 검토할 것입니다. 필요할 경우 허가 기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제 3 자 컨설팅이 요구되지 않거나 “특수 토지”가 연관되어 있지 않을 경우 OIO 은 등기 신청일로부터 30-50 영업일 이내에 결정을 내립니다. “특수 토지”란 해안(foreshore), 레이크베드(lakebed), 하상(riverbed) 등의 토지입니다.

상법/공정거래 문제

기본적인 검토

1986 년 상법은 시장 내 경쟁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체 자산이나 주식의 인수 및 합병을 금지합니다.

만약 어떠한 사업체 자산이나 주식을 인수한 결과로 인수 당사자 또는 다른 자가 뉴질랜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거나 갖게 될 경우, 그 어떠한 자도 그러한 사업체 자산이나 주식을 인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사업체의 자산이나 주식 인수에 관하여 통상위원회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는다면 그러한 승인 또는 허가의 효력이 있는 기간 동안 통상위원회 또는 그 어떠한 당사자도 해당 인수에 대하여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승인 및 허가

어떠한 사업체의 자산이나 주식 인수가 시장 내 경쟁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키는 않는다거나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없다고 통상위원회가 만족할만하게 인정할 경우 관련 인수는 허가됩니다. 허가 신청을 위하여 관련 당사자는 표준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통상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어서 통상위원회는 조사절차를 개시하여 관련 정보를 모으게 될 것입니다. 상법은 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당사자들간의 합의에 따라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균형 있는 가능성들을 토대로 해당 인수가 경쟁 완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에 만족할만하게 도달할 경우에 한하여 통상위원회는 승인을 합니다.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당사자들은 High Court 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 인수로 인하여 경쟁이 실질적으로 완화되거나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도 통상위원회가 일반인이 그로 인한 피해보다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결론에 도달할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를 부여하는 절차는 승인을 부여하는 절차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통상위원회는 신청서가 접수되고 조사가 완료된 후 결정문 초안을 발행합니다. 여기에는 통상위원회의 최초 의견이 명시되고 또 관련 당사자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어서 추후 분석, 결정을 진행해 나가기 전에 관련 당사자들은 통상위원회에 출두하게 됩니다. 더 긴 기간에 대한 합의가 달리 없는 한, 상법에 따라 결론 도출을 위한 신청서를 수령한지 60 영업일 이내에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승인과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인수에 따른 혜택은 꼭 경제적인 혜택일 필요가 없습니다. 가령, 사회적 또는 환경상의 혜택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이 인정해 온 혜택으로는 제품 혁신, 수출 수익 및 국제 경쟁력 개선 및 기업 부실화 방지 등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토지 매입하기

소유권 제도

뉴질랜드는 Torrens land registration system 를 사용하며 대부분 토지는 이 제도에 따라 별도의 컴퓨터레지스터(Computer Register)(과거 소유권 증명서라고 불림)에 기록됩니다. 컴퓨터레지스터에는 관련 토지의 크기, 장소, 그 소유자, 그리고 저당권, 부과금, 지역권 등을 비롯한 그 토지에 영향을 끼치는 기타 물권이 기록됩니다.

Computer Register 는 전자 등기부에 기록되어 검색과 토지 관련 사안들의 등록이 실시간으로 가능합니다.

토렌스 제도에 따라 매수인과 그 변호사는 일련의 소유권 문서들이 아닌 하나의 소유권 문서만 다루면 됩니다. 정부는 열람 시 Computer Register 내역이 사실이고 정확하며 그 내역에 속한 사항들은 매수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항임을 보증합니다.

토지를 매입하여 매수인의 이름이 컴퓨터등기부에 기록되는 즉시 그 소유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소유권의 효력에 대해서는 앞선 증서상의 결함이 현재의 소유권을 무효로 한다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순부동산권(fee simple estate), 교차임대소유권(cross lease) 및 유닛소유권(unit title)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흔한 3 가지 형태의 부동산권입니다. 단순부동산권은 사실상 해당 토지를 온전히 소유하는 것과 같으며 그 소유주에게 법에 따라 집행가능한 가장 많은 권리를 제공해줍니다. 교차임대소유권은 뉴질랜드 대도시에게 가장 흔히 사용됩니다. 이는 한 구획의 토지를 법에 따라 재분할할 필요 없이 둘 이상의 소유주들에게 각기 개별적인 소유권을 제공하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교차임대소유권은 단순부동산권을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서 그 토지의 일부분이 등기된 관련 “소유주”에게 장기간 (보통 999 년) 임대됩니다. 보다 큰 규모의 아파트 건물과 부동산 소유주들 간에 일종의 협력 시스템이 구축된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의 경우 유닛(strata)소유권이 흔히 사용됩니다. 각 소유주는 자신이 소유하는 특정 유닛에 대하여 별도의 소유권을 갖습니다. 빌딩과 더불어 외부 구조물 등과 같은 공동 구역은 관리사무소 *body corporate* 가 관리합니다. 유닛 소유주들은 관리비, 보험료, 행정비용 등을 위하여 관리사무소에 일정 금액의 비용을 납부합니다.

뉴질랜드에서 토지 매매

뉴질랜드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는 경우 가장 먼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행동하며 매수인이 선정되면 계약서 작성을 돕습니다.

농지 매매의 경우 경매나 입찰이 자주 사용됩니다. 최근 몇 년 새 주거용 부동산이 수요 및 가격 증가로 매도인들 사이에서 경매와 입찰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에서 대부분 부동산은 경매나 입찰이 아닌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협상을 통해 매매됩니다.

계약의 형태

뉴질랜드에서 토지 매입을 위한 대부분 계약은 Real Estate Institute of New Zealand 및 Auckland District Law Society 가 승인한 표준계약서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양 당사자는 보다 확실한 상태에서 거래를 할 수 있고 나아가 법률 비용을 아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영국 및 다른 여러 국가들과는 달리 뉴질랜드에서는 시작 단계에서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다만, 계약서는 매수인과 때로는 매도인이 다양한 사안들을 충족시켜야 하는 등 대부분 조건부 계약입니다.

부동산 매입을 하기 전 매수인은 다음의 사안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ㄱ) 매입을 위한 자금 조달 능력;
- (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하여 그 부동산의 사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역권 및 제한적인 약정을 비롯한 부동산에 대한 법적 장애물이 없어야 함;
- (ㄷ)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지역 당국이 보관하는 기록 상 문제가 없어야 함;
- (ㄹ) 해당 매입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할 경우 OIO 승인을 비롯한 모든 승인을 취득해야 함;
- (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임대차계약 조건이 만족스러워야 함. 특정한 경우 전문가/컨설턴트 자문이 필요할 수도 있음. 가령,
- (ㄷ) 기존의 빌딩이 안전하다는 점을 보장하는 건축업자 보고서;
- (ㄹ) 해당 부동산의 지반이 지진으로 불안정해지지 않았음을 보장하는 지질공학보고서가 요구될 수 있음;
- (ㅇ) 개발을 위해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매수인은 설계자, 건축가, 지질공학자, 측량사 및 기타 전문가들의 보고서를 위한 실사를 수행해야 할 수도 있음;
- (ㅈ) 농지 매입의 경우 농장컨설턴트 보고서가 요구될 수 있음; 및
- (ㅊ) 일부의 경우 환경 평가가 요구될 수 있음 (단, “청정” 지역인 뉴질랜드에서 이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음)

경매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경매일 이전에 모든 사안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 이유는 낙찰을 확정 짓는 망치를 두드리는 순간 낙찰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입해야 하는 의무에 구속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매수인은 입찰에 응하기 전에 이와 같은 사안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단, OIO 승인이 요구될 경우 이러한 입찰은 해당 승인을 취득하는 것을 조건부로 합니다.

협상을 통해 작성된 계약서를 바탕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특정 기간 내에 매수인 또는 그 변호사가 특정 사안에 대하여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의 제안이 제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매수인은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다른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가로채지 못하며 위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부 계약의 경우 필요한 승인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컴퓨터레지스터(소유권) 또는 (지역 당국이 발행하는) Land Information Memorandum (LIM) 보고서 또는 기타 조사에 따라 문제가 발견된다면 매수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조건부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는 특정 토지에 대한 권리가 있는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흔히 뉴질랜드에서 계약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LIM 상 명시되는 부동산의 소유권 및 공개 사안들에 대하여 매수인의 변호사가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따라 계약의 성사 여부가 갈립니다.

매수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매입가격의 5-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는 계약에 서명을 하는 즉시 또는 계약이 무조건부 계약으로 바뀌는 즉시 지급됩니다. 계약에 서명하는 즉시 계약금을 지급했지만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통상적으로 매수인은 계약금 전부를 돌려받습니다.

외국인 매수인들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 OIO 승인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모두 법률 자문을 구할 것을 권합니다. 법률 자문을 구할 기회가 없을 경우 계약은 매수인이 OIO 승인을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합니다.

민감성토지 및 해외투자제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행위는 규제를 받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OIO 가 담당합니다. OIO 와 그 기능에 관한 정보를 원하실 경우 www.linz.govt.nz/overseas-investment 를 방문 바랍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장려합니다. 하지만 OIO 는 일부 토지 종류를 “민감성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이러한 토지의 매입을 희망할 경우 외국인투자규정(Overseas Investment Regulations)에 의거하여 OIO 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신청을 할 경우 그 결과는 대부분 성공적입니다. 그러나 승인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날로 엄격해지고 있으며, 이로써 승인 신청을 할 경우 법률 자문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주거용 및 상업용 매입의 경우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외국인이 민감성 토지를 매입할 경우 승인이 요구됩니다. 다시 말해, 외국인이 민감성 토지를 직접 매입하거나, 그 토지를 소유하는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통하여 그 토지를 매입할 경우 외국인은 승인을 취득해야 합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관계자가 다음 각호를 매입하는 경우 민감성 토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로 인정됩니다.

(ㄱ) 토지에 대한 권리. 단, 토지가 민감성 토지이고 취득한 권리가 단순부동산권(freehold/fee simple) 또는 기간이 3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이어야 함.

- (ㄴ) 회사 증권에 대한 권리. 단, 해당 회사가 위 토지를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그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하고, 나아가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관계자가 그 매입을 한 결과 해당 회사 지분 25% 이상을 소유하거나, 기존에 소유한 25% 이상의 지분이 증가하거나, 해당 회사가 외국인이 되어야 함.

광범위하게 말해 관련 토지에 대하여 규정된 기준영역을 넘어서고 그 토지가 특정 종류의 토지일 경우 민감성 토지입니다. 예를 들어 민감성 토지란 다음을 포함합니다.

- (ㄱ) 5 헥타르를 초과하고 도시권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 (ㄴ) 특정 섬에 위치할 경우
- (ㄷ) 해안(foreshore) 또는 해저면(seabed)을 포함하거나, 0.2 헥타르를 초과하고 해안에 인접해 있을 경우
- (ㄹ) 0.4 헥타르를 초과하고 호수의 바닥이거나, 보존 목적을 위하여 묶인 토지이거나, 보호구역 또는 공원으로 제공되는 토지이거나, 레크리에이션 또는 사유공개공간인 토지이거나, 문화유산명령에 따라 규율되거나 문화지로 지정되었거나, 0.4 헥타르를 초과하고 위와 유사한 종류의 토지에 인접해 있을 경우.

비도시권 토지(non-urban land)는 배타적으로 또는 주로 농업, 원예 또는 목축을 위하여 또는 양봉업, 양계업 또는 축산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OIO 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뉴질랜드 일반인에게 해당 농지 매입 오퍼를 해야 합니다 (최소한 20 영업일 이상 시장에 오퍼가 돼야 합니다).

농지를 오픈마켓에 매입 오퍼를 해야 하는 요건이 있다고 하여 외국인 매입자에게 해당 농지를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규정 상 매도인은 오로지 오픈마켓에서 이루어진 오퍼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승인을 받기 이전에 오픈마켓 매입 오퍼 절차는 이행되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OIO 는 제 3 자 컨설팅이 요구되지 않거나 “특수 토지”와 관련이 없는 경우 간단하고 상급인 신청서에 대하여 그 신청서의 제출일로부터 30-50 영업일 이내에 결정을 내립니다. “특수 토지”란 해안(foreshore), 레이크베드(lakebed) 또는 하상(riverbed) 등을 의미합니다.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OIO 는 사업수완, 투자의 규모(financial commitment) 및 특징 등과 관련된 투자자 핵심 기준을 바탕으로 해당 신청을 검토할 것입니다. 민감성 토지와 관련된 신청일 경우 OIO 는 해당 거래가 뉴질랜드에 끼치는 혜택에 대하여 고려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하여 OI 는 특정 환경적 및 경제적 요인들을 분석합니다. 필요할 경우 승인 기준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

Securities Act

뉴질랜드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증권공모는 Securities Act 1978(및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규정들)에 따라 규율됩니다.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증권 발행인은 공모 대상 증권의 정보를 포함한 등록된 투자설명서(registered prospectus)와 투자명세표(investment statement)를 우선 배치해야 합니다. 증권공모가 뉴질랜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증권의 실제 배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 또는 증권 공모를 이행하는 자가 뉴질랜드 거주자이건 간에 상관 없이 해당 규제 사항들이 적용됩니다.

담보란 여하한 자의 자본, 자산, 소득, 로열티 또는 기타 재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 지분 증권(어떠한 회사 지분 또는 자본에 대한 권리);
- (㉡) 부채담보(입금되었거나 다른 자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지분 또는 지급받을 권리);
- (㉢) 뮤추얼펀드(unit trust)에 대한 권리(unit);
- (㉣) 연금제도에 대한 권리(interest);
- (㉤) 생명보험증권;
- (㉥) 참여 담보(participatory security, 대중에게 투자를 요청하는 파트너십이 제공하는 담보).

“오퍼(offer)”란 초청과 오퍼를 하라는 제안이나 초청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증권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교신은 Securities Act 규정 적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누가 “대중”의 일원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일부 경우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중에게 증권이 오퍼될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 자문을 꼭 구해야만 합니다. “대중”의 정의는 “대중의 그 어떠한 부분이든 해당 부분에 어떻게 선택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포함합니다. 어떠한 자가 한 회사의 직원, 고객 또는 주주라는 이유로 대중의 일원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한 회사가 등록된 투자설명서와 투자명세서 없이 대중에게 증권을 오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증권의 배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증권 발행인은 청약인들이

해당 증권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을 그에 대한 이자와 함께 상환해 주어야 합니다. Securities Act 는 일부 경우에 한하여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도 있습니다. 이사들은 상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Securities Act 상 대중에게 증권을 오픈하기에 앞서 등록된 투자설명서와 투자명세서를 제공해야 하는 규정에 대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주요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ㄱ) 발행인의 친인척 및 가까운 사업 동업자 또는 발행회사의 이사;
- (ㄴ) 주요 업무가 금전적인 투자이거나, 사업 활동 중 종종 금전적인 투자를 하는 개인;
- (ㄷ) 최소 청약 금액이 NZ\$500,000 인 경우;
- (ㄹ) “자산가”로 공인된 자 (순자산 최소 NZ\$2,000,000 또는 총 연소득이 지난 2 년간의 회계연도 동안 NZ\$200,000 이상인 경우); 및
- (ㅁ) 금전 투자 또는 해당 증권 관련 업계 및 사업에 투자한 공인된 경력을 가진 자.

특수 예외사항들도 다수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외국 회사가 뉴질랜드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이미 해외에서 유사하거나 보다 엄격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발행인이 이중 규정의 적용을 막기 위하여 고안된 것들입니다.

증권을 정식으로 상장하기 위해서는 NZX Limited 가 운영하는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상장만 인정됩니다. “Unlisted(비상장)”라고 불리는 규제되지 않는 거래소가 있는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증권 거래 서비스로 중소기업들에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저렴하고 용이한 플랫폼을 제공해줍니다.

NZX Limited(“NZX”)는 뉴질랜드의 유일한 등록거래소를 운영합니다. 다음의 3 개의 주요 시장이 해당 거래소를 구성합니다.

- (ㄱ) NZSX(뉴질랜드주식시장) - 지분증권을 위한 주요 시장
- (ㄴ) NZAX(뉴질랜드알터너티브시장) -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보다 저비용이고 유동적인 시장
- (ㄷ) NZDX (뉴질랜드 채권시장) - 회사 및 정부 채권 및 확정금리부증권.

외국회사는 NZX 시장과 해외 거래소에 “이중 상장”이 가능합니다. 특정 해외 거래소에 상장을 한 회사의 경우 NZX 시장에 “해외상장” 등록을 하여 NZX Listing Rules 를 전부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3 개의 시장 각각의 상장규칙은 NZX 홈페이지(<http://www.nzx.com/market-supervision>)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 규정

최근 뉴질랜드 자본 시장에 새로운 금융시장 규제당국, 즉, Financial Markets Authority(“FMA”)가 등장하였습니다. FMA 는 뉴질랜드 자본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증권, 재무보고 및 금융 자문의 제공과 관련된 금융시장 법규 준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나아가 FMA 는 내부자거래, 시장조작 및 기타 거래상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Securities Market Act 1988 상의 규정들을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부자거래” 규칙상 개인 및 법인들은 상장회사 증권에 관한 가격에 민감한 정보(즉,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정보)를 해당 증권을 거래하는 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상장 발행사 증권을 거래하는 자와 법인들이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는 행위를 금하는 규정들도 있습니다.

Takeovers Code

Takeovers Code(“Code”)는 Code 회사 지배권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소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었습니다. Code 는 NZX 에 상장된 모든 회사와 주주 50 인 이상을 둔 비상장회사에 적용됩니다.

Code 에 포함된 “Fundamental Rule”에 따르면 그 어떠한 자(또는 관련 당사자)도 Code 회사의 의결권 증권 20% 이상을 인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미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 비율을 늘릴 수 없음). Fundamental Rule 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예외사항 중 한 가지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 (ㄱ) Code 회사의 모든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전체적 또는 부분적 인수 오퍼 (전체적 오퍼란 보유 주식 전부를 매수하겠다는 오퍼이며, 부분적 인수 오퍼란 각 주주로부터 특정 비율의 지식을 인수하겠다는 오퍼임);
- (ㄴ) 제안한 인수 또는 할당과 관련되지 않은 Code 회사 주주들의 보통 결의를 통하여 승인된 증권의 인수 또는 할당;
- (ㄷ) 발행된 의결권주식을 50% 및 90% 사이의 비율만큼 보유하는 자에게 그들의 의결권 비율을 12 개월 기간 이내에 5%까지 높이는 것을 허용하는 “크립(creep)” 예외사항;

(르) Code 회사의 의결권주식의 90% 이상을 이미 보유하는 자의 “강제 인수”를 통합 (이 경우 대주주는 나머지 주주들에게 자신에게 주식을 매도하게끔 강제할 수 있으며, 소주주들은 대주주에게 그들의 주식을 사들이게끔 강제할 수 있음); 또는

(코) Takeovers Panel 이 예외사항을 인정한 경우.

금융서비스 규정

(금융서비스 제공자 및 금융자문사)

Financial Advisers Act 2008(“Financial Advisers Act”)은 금융 자문 및 중개인에 대한 규제책을 제공해줍니다. Financial Advisers Act 는 전문성, 역량 및 행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Financial Service Providers Act 2008 (등기 및 분쟁 결의)에 따르면 금융 서비스 업무를 영위하는 자들은 Financial Service Providers Register 에 등록을 해야 하며 소매 고객들(retail clients)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분쟁해결 기구에 속하여야 합니다.

Financial Advisers Act 는 금융자문사와 관련하여 다양한 카테고리를 제공합니다. 각 카테고리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제공되는 자문과 제품의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Financial Advisers Act 는 투자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자문사와 중개인들에게 적절한 정도의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특정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Financial Advisers Act 는 나아가,

(ㄱ) 소매 고객이 특정 금융자문사나 중개인을 사용할지 여부 및 금융자문사의 경우 해당 자문사의 자문을 따를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금융자문사 및 중개인이 고객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정도를 규정하고;

(ㄴ) 고객의 필요와 리스크 프로파일에 대한 알맞은 금융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매 고객들을 다루는 특정 금융자문사들로 하여금 적절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요건을 부과하고;

(ㄷ) 금융자문사들이 소매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이해의 상충 문제를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합니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자들은 검색 가능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야 하며, “소매 고객”에게 금융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분쟁해결 기구에 속해야 합니다. 본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은 대중들에게 금융서비스제공자의 이름과 주소 및 (있을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속해 있는 분쟁해결 기구의 이름에 대한 정보에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금융서비스”란 그 중에서도 다음을 포함합니다.

- (ㄱ) 금융 자문 서비스 (통상적인 업무 과정 중 금융 자문 또는 투자 계획을 제공);
- (ㄴ) 다른 자들을 대신하여 돈, 증권 또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관, 투자, 집행 또는 관리하는 업무;
- (ㄷ) 등록된 은행;
- (ㄹ) 용자계약을 바탕으로 용자를 제공;
- (ㅁ) 재정보증을 제공;
- (ㅂ) 증권 발행인 또는 프로모터(trustee, unit trustee, superannuation trustee 포함)로서 대중에게 증권을 오피하는 일에 참여하는 행위;
- (ㅅ) 현금 송금 서비스 또는 외환 업무의 운영;
- (ㅇ) 보험업자로서 행위; 또는
- (ㅈ) 파생 상품(derivative) 거래 또는 선물계약을 체결하는 업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란 금융 서비스를 제공 또는 오피하는 업무의 영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업무가 서비스 제공자의 유일한 업무 또는 주된 업무인지 여부는 관계 없음). 어떠한 자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한다고 간주되는지에 대하여 예외도 상당 수 있습니다. 그 중 통상적인 업무 과정 중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 부동산 양도 전문 변호사(conveyance), 공인회계사 및 부동산 중개인 및 무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정부 기관과 비영리기관 등이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일 경우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 최대 NZ\$30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방지하지 못하는 이사는 본인 스스로 해당 위법행위를 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금융서비스제공자는 “소매 고객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록 신청을 하기에 앞서 승인된 분쟁해결기구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소매 고객이란,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써 “도매 고객”이 아닌 자입니다. 도매 고객이란, 예를 들어, 자신의 주된 업무가

현금 투자, 대기업 또는 특정 Crown entity(뉴질랜드의 책임운영기관)이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신의 업무의 일환으로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각 기구마다 연간 지급해야 하는 멤버십 비용이 있으며,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고소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비용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분쟁해결 기구에 가입을 하게 된 즉시 금융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에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서비스 제공자 등록소는 등록신청서에 이름이 기재된 각 개인(이사, 지배 소유주 및 고위 경영인)에 대한 범죄기록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는 2-5 영업일이 소요되며, 범죄기록 조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게 될 경우 등록이 완료됩니다. 금융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범죄기록을 매년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 하고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을 잃게 될 경우 해당 사실을 등록소에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

고용관계

단체 계약이든 개인 계약이든 간에 신의성실한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은 뉴질랜드 고용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아가 고용 분야를 규율하는 Employment Regulations Act 2000 의 요건이기도 합니다.

고용계약의 종류

뉴질랜드의 모든 직원들은 고용계약이라고 불리는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 계약 또는 단체 계약일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고용계약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규정들이 있으며, 고용계약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꼭 준수해야만 하는 최소 조건들도 있습니다. 고용법은 추가 권리를 위한 협상에 대한 틀도 제공해줍니다.

단체고용계약 / 노동조합

고용주들은 2 인 이상의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단체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노동조합은 규제를 받는 집단으로서 현재 뉴질랜드에서 직원들과 단체고용계약을 맺을 수 있는 집단은 노동조합뿐입니다. 직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고용주(또는 다른 자)가 직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노동조합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한 즉시 고용주는 요청을 받을 경우 해당 조합과 단체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해야만 합니다. 협상을 통하여 다양한 사항들을 다룰

수 있겠으나, 협상은 대부분 수행하는 업무 또는 관련 근로자에 대한 계약의 적용 범위 및 계약 조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개인고용계약

개인고용계약은 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특정 직원에 대한 조건을 포함합니다. 단, 이러한 조건은 위에서 언급한 법률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기간제고용계약

기간제고용계약은 고용주가 기간제고용을 제시할만한 합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진정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이는 고용 관계를 시작하기에 앞서 설명되어야 합니다. 기간제고용 조건은 고용계약에 기재되어야 하고 나아가 고용 관계가 어떻게, 어떤 이유로 종료되는지 명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절 업무 또는 특정 프로젝트의 완료로 인한 종료 등의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그들의 업무가 정해진 기간의 종료와 함께 종료된다는 점을 제외하고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시간제/임시 직원

시간제 직원(정규 직원들에 비하여 단순히 몇 시간 덜 일하는 직원)은 고정 직원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정규 직원들과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반면 임시 직원들의 경우 간헐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근무를 합니다. 임시 직원들은 전반적으로 고정 직원들과 동일한 권리를 갖지만, 연차 휴가, 병가 및 경조사휴가의 경우 임시 직원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휴가권

뉴질랜드 법률상 휴가 4 주, 공휴일 11 일, 병가 5 일, 조의휴가 3 일이 연간 최소 법정 휴가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장기근속휴가가 법적 권리로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고용주가 최소 법정 휴가보다 더 많은 휴가를 제공하고 싶은 경우, 이는 그 필요에 따라 해당 내용이 직원의 고용계약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직원들은 특정 기준에 부합할 경우 유급 및 무급 출산/육아 휴직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유급휴가는 고용주가 아닌 정부가 그 비용을 지급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들은 출산/육아 휴직 중인 직원들의 일자리를 공석으로 유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직원들은 근무 중 사고로 상해를 입는 경우 또는 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 등의 경우 (아래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을 참고)에는 다른 종류의 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시험기간/수습기간

고용주들은 시험기간 또는 수습기간을 포함하는 고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그 적용이 비슷해 보여도, 서로간의 약간의 차이점을 보입니다.

시험기간은 고용주에게 90 일 기간 동안 직원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고용주는 90 일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또는 90 일 기간이 종료하는 일자에 해당 직원의 고용을 해지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해당 직원은 부당해고 항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은 (부당 해고가 아닌) 고용주의 차별, 희롱 및 부당한 조치 등과 관련하여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고용주에게 특정 역할에 대한 직원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게 해주나, 성과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고용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고용주에게 더 큰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시험기간과는 달리, 수습기간은 90 일 보다 더 길 수 있습니다.

시험기간 또는 수습기간 중인 직원들은 최소 고용 권리를 갖습니다.

고용관계의 종료

고용관계는 퇴직 또는 사임, 해임 및 정리해고 등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 종료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는 정해진 퇴직 연령이 없으며, 고용주들은 단순히 연령상의 이유로 직원에게 퇴직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은 언제든지 그들의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그들의 고용계약에 따라 합리적인 통지를 해야 합니다.

해임의 경우 해임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임 과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관련 사항이 어떠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해임과 관련된 고용계약상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정리해고의 경우 고용주에게는 정리해고를 위한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고용주는 (성과 등) 직원 개인의 문제로 인하여 해당 직원을 해임시킬 목적으로 정리해고를 악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의 일자리에 영향을 끼치는 변경사항을 고려하고 있을 경우 해당 직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 및 직원, 또는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노조가 동의를 한 경우 정리해고 보상을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고용 문제/항의절차

단체계약 및 개인계약은 고용관계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을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문제란 고용주 및 직원 사이의 관계와 더불어 직원들 간의 문제 등 고용관계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문제들 중 일부는 뉴질랜드 법률 상 특정 처리과정을 요구하는 “항의절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항의절차는 부당해고로 이어지는 조치 또는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고용주가 부당하게 행동한 경우 등의 이유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직원은 문제제기를 한 행동이 일어난 지 90 일 이내에 항의절차를 제기해야 합니다.

고용주와 직원은 고용법원(Employment Court)에 이어 고용관계당국(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에 결정 신청을 하기 전에 조정을 통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매각에 따른 직원 이전

고용주는 비즈니스가 매각 또는 이전되거나, 업무 외주가 주어지는 경우 특정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대부분 고용주들은 전술한 상황에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계약에 포함된 “직원보호”조항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정 케이터링, 청소, 관리, 세탁 및 잡역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의 경우 구조조정 중 해당 직원들에게 고용보호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특별한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의무사항

뉴질랜드 고용주들은 직원들과 관련하여 아래 명시된 바와 같은 다른 의무사항을 갖습니다.

KiwiSaver – KiwiSaver 는 업무 관련 자율저축계획으로 뉴질랜드인에게 퇴직 대비 장기 저축 계획을 제공해 줍니다.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필수 정보를 제공하고, 직원 보수에서 공제를 하고, 직원이 본 계획에 가입하기로 선택할 경우 요구되는 공헌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의무사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 및 안전 – 고용주들은 작업장에 접근하는 모든 자들에게 적절한 훈련, 감독 및 장비와 함께 안전한 작업장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험 요소를 적절히 찾아내고,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작업장을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의무사항이 포함됩니다. 직원들은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고 자신의 업무로 인하여 다른 자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도록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PAYE (Pay As You Earn) – PAYE 는 직원들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세워진 제도입니다.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부터 공제되어 **Inland Revenue Department** 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임금, 급여 및 (보너스, 일괄지급금 등) 추가수당에 적용됩니다.

임금 및 기록 – 일반적으로, 성인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6 세 이상인 직원들에게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매년 최저임금을 검토합니다. 고용주들은

단순히 남/여 성별상의 차이를 바탕으로 임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뉴질랜드에는 임금 지급과 임금, 시간, 공휴일 및 휴가를 기록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적 요건이 존재합니다.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 ACC 는 “무과실” 계획으로 작업장 사고 등 뉴질랜드에서 발생하는 그 어떠한 사고든 적용이 됩니다. 간단히 말해 ACC 는 이유불문하고 사고로 인한 그 어떠한 보상이든 임금손실이든 간에 해당 문제를 다루는 계획입니다.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직업 종류 및 직원 수에 따라 고용하는 모든 직원들을 위하여 연 부과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원들은 ACC 요금을 지급하는데, 이는 PAYE 와 함께 공제됩니다. 직원이 작업장에서 상해를 입는 경우 고용주는 해당 직원이 출근하지 못하는 첫 5 일 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 고용주는 위 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독립적 도급업체

모든 사안을 완전하게 다루기 위하여 고용관계와는 별도로 존재하는 또 다른 형식의 관계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는 사용자-계약자 관계로부터 비롯된 독립적 도급업체 관계를 의미합니다. 도급업체들은 주로 독립적인 도급계약 또는 “서비스를 위한 계약”을 통하여 고용이 되며, 뉴질랜드 관계 법률상 직원들이 누리는 권리와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 어떠한 자가 고용계약에 따라 고용되었는지, 또는 독립적 도급계약에 따라 고용되었는지 상대적으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 간에 체결된 계약의 종류는 항상 그들 사이의 관계의 성질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이 같은 고용관계 또는 도급업체 관계는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 또는 Employment Court 에 신청을 하여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당국은 그 관계의 진정한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러 검토방법(test)을 통하여 해당 상황을 살펴볼 것입니다.

진행중인 운영상의 문제

Fair Trading Act

Fair Trading Act 1986(“Fair Trading Act”)는 Commerce Commission 이 집행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 관련 행동들을 규율합니다. 광범위하게 말해, 위 Fair Trading Act 는 거래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 행위, 거짓 정보의 제공 및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금합니다. 나아가 특정 소비자 정보의 공개를 규정하고 제품 안전을 장려합니다.

Fair Trading Act 는 모든 상황에서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기업들을 강제하지 않지만,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그 어떠한 정보라도 반드시 정확할 것을 보장하고 소비자가 결정을 내릴 때 믿을 수 있고 정확한 정보를 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의 제공을 유보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Consumer Guarantees Act

Consumer Guarantees Act 1993 는 개인 또는 가정 내 사용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구매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보증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보증은 해당 상품이 품질상 용인될만하고, 설명/샘플에 부합하고, 소비자가 알리거나 공급자가 표방하는 그 어떠한 특정 목적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알맞음을 제시해 줍니다.

서비스에 대한 보증은 서비스가 상당한 주의 및 기술과 함께 해당 서비스가 공급되는 목적에 부합되게 합리적인 시간 내에 수행되고 완성됨을 제시해 줍니다.

판매자들은 비즈니스를 위해 구입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Consumer Guarantees Act 에 따른 자신의 의무사항에 대해 외주를 줄 수 없습니다. 본 법률은 보증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공급업체 및 제조업체들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구할 수 있는 다양한 구제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ct

뉴질랜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된 또 다른 법으로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ct 2003 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소비자신용계약(consumer credit contract)”을 체결하는 채권자에게 해당 계약의 조건에 관한 특정 정보를 포함하는 서면 통고서를 제공할 것을 규정합니다.

위 법은 “곤란(hardship)”의 이유에 따라 소비자들이 다른 신용조건을 따를 수 있게 해주며, 법원이 해당 계약을 검토하고, 적절할 경우, “억압적(oppressive)” 계약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신용계약이란 신용이 제공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채무에 대한 대금지급을 연기하거나, 채무를 발생시키고 그 대금지급을 연기할 권리가 주어진 자에게 신용이 제공되었다고 합니다. 나아가 신용계약은 재산, 상품 또는 서비스 구입에 대한 대금지급을 연기할 권리도 포함합니다.

위 법은 계약에 대하여 신용업체가 이자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과 수수료, 대금지급, 연장된 보증 및 취소에 관하여 규제합니다.

법정손해배상금, 최대 NZ\$30,000 에 달하는 벌금 및 소비자 신용 제공을 금하는 등의 처벌이 있습니다. 위 법의 시행은 Commerce Commission 의 책임입니다.

Commerce Act (반경쟁적 행위 및 가격 통제)

반경쟁적 행위

Commerce Act 1986 의 목적은 시장 내 경쟁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법률은 가격고정 행위, 카브아웃(carve out),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등 시장 내 경쟁을 실질적으로 축소시키는 계약을 금합니다.

위 법이 금하고 있는 행위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ㄱ) 시장 내 경쟁을 실질적으로 축소시키는 계약;
- (ㄴ) 경쟁업체와의 거래를 제외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및
- (ㄷ) 가격을 고정, 유지 또는 통제하는 계약(카르텔).

위 법이 금하는 일방적 행위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ㄱ) 반경쟁적 목적을 위하여 비즈니스 또는 개인이 자신의 지배적 시장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및
- (ㄴ)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자에게 최소 가격을 특정하는 행위.

실질적으로 경쟁이 줄어들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원은 다른 시장 참여자들이 효과적으로 경쟁을 할 수 있는지 (가령, 스스로 자신의 가격, 품질 기준 및 생산량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신규 경쟁업체가 시장에 참여하는데 얼마만큼의 어려움을 겪는지 등의 사안을 고려합니다.

Commerce Commission 은 반경쟁적 행위에 관하여 제기된 사안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위 법이 위반되었다고 볼 경우 경고문을 발행하거나,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Commerce Commission 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해당 비즈니스가 위 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가 잠재적 손해보다 더 큰 혜택을 가져다 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통하여 사업체는 추가 조치가 행해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Commerce Commission 에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길고 복잡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격 통제

위 법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을 정하거나 가격책정 방법을 방해하는 행위 등 경쟁업체들 간의 가격고정 행위를 금지합니다. 가격고정계약은 카르텔이라고 불립니다. 사업체들이 서로간에 경쟁하기 보다는 반경쟁적 목적을 위하여 함께 행동을 하기로 합의하게 될 때 카르텔이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가격 고정 행위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올리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줄이고, 종종 혁신, 품질 및 투자를 약화시켜 경쟁을 저해합니다.

위 법은 특히 서로간에 경쟁하는 당사자들 간에 가격을 고정하거나, 통제하거나, 유지하려는 목적을 위한 계약 또는 약정을 금지합니다.

금지된 계약의 종류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ㄱ) 가격고정: 최소 가격을 정하거나, 할인을 제외 혹은 축소하거나, 가격 책정을 위한 공식을 두고 있거나, 가격을 올리거나 유지시키는 계약;
- (ㄴ) 담합입찰: 누가 입찰을 따 내는지 정하고 있는 경쟁업체들 간의 계약. 이 같은 계약은 소비자들이 입찰자들이 가장 낮은 가격을 제공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모른다는 결과를 초래;
- (ㄷ) 시장분할(market sharing): 경쟁업체들이 그들 간에 시장을 분할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즉, 지역, 제품 또는 고객을 서로간에 분할); 및
- (ㄹ) 생산량 통제: 생산량을 통제하기 위하여 경쟁업체들 간에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 생산량을 제한하거나 줄이기로 합의하고, 가격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행위.

2 곳 이상의 회사가 합작투자를 하거나, 개인들 간에 파트너십 계약이 있는 경우 등 위 법률상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가격고정 행위가 있습니다.

채권자 보호: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및 담보권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1999 는 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고 집행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산이란 토지(및 기타 특정 예외사항) 를 제외한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에 따른 담보권은 거래상 동산에 대하여 설정되었거나 제공되는 권리로, 그 거래의 형식 및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상관 없이 대금지급 또는 의무사항의 이행을 담보합니다.

동산에 대한 담보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담보권은 동산에 “연결(attach)”되어야 하며, 담보권자는 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대항력을 갖추어야(perfect)”해야 합니다.

연결(attachment)은 채무자가 유효한 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설정됩니다. 담보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ㄱ) 채무자가 서명을 하였거나, 서면 계약으로 하겠다고 채무자가 합의;

(ㄴ) 합리적으로 구별 가능하도록 담보될 동산에 대한 설명을 포함; 및

(ㄷ) 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대항력 형성은 담보권자가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PPSR”)에 채무상황표(financing statement)를 등록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PPSR 이란 Registrar of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가 운영하는 온라인 등기부를 의미합니다.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는 담보권자를 위한 우선순위규칙과 집행옵션(enforcement option)을 제시합니다. 우선순위는 완성 순서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는 완성 순서에 따라 정해진다는 이 일반적인 원칙을 변경하는 특정한 우선순위 규칙들이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뉴질랜드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는 상표, 특허, 의장 및 식물다양성에 대한 권리를 등록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Patent Co-operation Treaty, Paris Convention, Berne Convention, 및 지적재산권의 거래 관련 특징에 대한 계약(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협약 및 합의의 서명국입니다.

상표

Trade Marks Act 2002 에 따라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된 상품과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뉴질랜드는 상표가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45 개의 분류사항 중 1 가지 이상에 등록될 수 있도록 Nice Classification System 을 활용합니다.

해당 등기소는 대중이 사용 가능하며, 등록은 (신청일자 또는 합의 일자로부터) 10 년 간 계속됩니다.

특허

Patents Act 1954 에 따라 부여된 특허는 발명품에 대한 등록 소유주(registered proprietor)에게 특허 기간 동안 해당 발명품을 사용하고 그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해줍니다(독점권). 특허권은 갱신 비용을 지급할 경우 최대 20 년까지 부여됩니다.

특허를 등록할 자격을 얻기 위해 발명품은 산업적으로 사용 가능해야 하며, “자명하지 않은(non-obvious)” 발명 단계를 포함하면서 새로워야 합니다. 특허 출원을 하기에 앞서 해당 발명품이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장

의장이란 관련된 물품에 산업 프로세스, 과정 또는 수단을 통하여 적용된 모양, 구성, 패턴 또는 장식으로서 시각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고 판단할 수 있으며, 기능적이지 않거나, 구성 방법 또는 원칙이 아닌 특징들을 의미합니다. Designs Act 1953 에 따라 등록 가능하기 위하여, 의장은 새롭고 독창적이어야 하며, 출원 일자 이전에 뉴질랜드에서 발행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의장 등록 기간은 최대 15 년입니다 (단, 출원 일자로부터 5 년 및 10 년째 되는 해에 갱신료를 지급할 경우에 한해서임).

저작권

저작권은 뉴질랜드에서 등록 불가능합니다. 저작권 보호는 문학, 희곡, 뮤지컬 또는 예술 작품, 음성기록, 영화 또는 커뮤니케이션 작업물 등 그 어떠한 원저작물(original work)일 경우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원저작물의 소유주들은 사본을 만들고, 각색하고, 대중에게 사본을 발행하고, 대중에게 해당 작품을 공연하거나, 연주하거나, 보여줄 수 있는 권리를 Copyright Act 1994 에 따라 부여 받습니다.

저작권 기간은 음성 기록과 영화의 경우 보통 해당 작품이 만들어진 이후로부터 50 년 간이고, 문학, 희곡, 뮤지컬 및 예술 작품의 경우 해당 작가가 사망한 이후 50 년 간입니다.

Goods and Services Tax

Goods and Services Tax(“GST”)는 뉴질랜드에서 대부분 상품과 서비스에 15%의 비율로 부과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소비세를 의미합니다. 사업체들은 적절한 부분에 대하여 GST 를 부과하고 정부를 대신하여 이를 징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상의 구매 및 지출에 부과된 GST 는 향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GST 등록 및 GST 기록/상환과 관련하여 세금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질랜드의 법률 체제

정부

뉴질랜드의 정부 체제는 영국 제도에 따라 비롯되었으며, 관습법과 성문법 둘 모두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관습법은 영국과 뉴질랜드에서 판결된 사법 판결에 따라 만들어진 법률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영국, 호주, 미국 및 캐나다 관할권에서 결정된 판결문도 관련성을 가지며,

새로운 신흥 법률 분야에 대하여 결정을 내려야 하는 법원이 도움을 위하여 종종 활용합니다. 성문법은 뉴질랜드 의회가 만든 법률을 의미합니다.

뉴질랜드 정부체제의 주요한 특징은 정부 기관들 사이의 3 권분립입니다. 권력의 분립은 그 어떠한 기관도 비헌법적으로 행동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의 3 개 기관으로는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부가 있습니다.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입법부는 웨스트민스터 정부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영국 의회 제도로부터 비롯된 뉴질랜드 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뉴질랜드의 최고 입법 기관입니다. 의회는 2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으로 뉴질랜드 국가 원수(엘리자베스 II 세 여왕)로서 총독이 있습니다. 총독은 총리의 추천 후 여왕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5 년입니다. 총독은 여왕의 권한을 행사하고, 여당 지도자로 하여금 정부를 구성하도록 초청하는 일이 그 헌법에 따른 총독의 주요 기능입니다. 총독은 헌법상의 합의에 따라 정부 각료들의 자문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총독이 정부가 자문하는 바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총독은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 같은 일은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뉴질랜드 의회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의회는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만을 두고 있습니다. 하원은 120 명의 의원(members of parliament, MP)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원의원의 임기는 3 년입니다. 18 세 이상인 뉴질랜드 시민은 3 년마다 열리는 선거에서 의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하원의 책임으로는 토론 및 법률안(legislation)을 통과시키고, 정부에 자금을 공급하고 뉴질랜드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업무 등이 있습니다.

행정부의 법률을 개시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행정부는 총리, (여당 또는 의회 정당에 소속된 장관으로 구성되었고 총리가 주재하는) 각료 및 공공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법부는 법률을 적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뉴질랜드 헌법상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그 결과 정치적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는 뉴질랜드 사법 체제에서 사법부의 주요한 특징입니다. 판사는 법원에 제기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판사들은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이 무엇을 뜻하는지 해석을 하는 것을 통하여 법률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판사는 총독이 임명합니다. 모든 판사는 최소 7 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을 지니고 있으며, 대부분 7 년을 훨씬 넘는 기간 동안 변호사로서 활동해 왔습니다.

뉴질랜드의 헌법

뉴질랜드는 성문 헌법이 없습니다. 법률 체제의 바탕이 되는 헌법은 중요한 법규, 법적 판결문 및 헌법상의 관례(constitutional convention)라고도 불리는 관습규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법치주의 또한 뉴질랜드 헌법에서 중요한 부분을 구성합니다. 법치주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개념을 내포합니다.

- (ㄱ) 의원 및 관료들이 행사하는 권한은 법적 권한에 기반을 두고 있음;
- (ㄴ) 법률이 따라야 하는 최소 수준의 정의가 존재;
- (ㄷ) 광범위한 재량권 남용에 대하여 법률은 안전 장치를 두고 있어야 함;
- (ㄹ) 부당한 차별은 법률상 허용되어서는 안 됨; 및
- (ㅁ) 어떠한 자도 공정한 법원 또는 재판소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 없이 자신의 자유, 지위 또는 기타 중대한 권리를 박탈당해서는 안 됨.

Waitangi 협정

Waitangi 협정(“본 협정”)은 1840 년 체결되었으며, 이는 영국과 다수의 마오리족 간에 체결된 계약입니다. 현재 본 협정은 헌법적 문서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는 영국, 뉴질랜드 및 마오리족 간의 관계를 구축하고 지침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법원 제도

뉴질랜드는 형사 및 민사 청구를 심리할 수 있는 계층으로 나누어진 법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뉴질랜드는 특수 법원으로 가정법원, 환경법원, 고용법원, 청소년법원 및 마오리토지법원을 두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법원 프로세스는 영국과 호주의 법원 프로세스와 비슷합니다. 일부 예외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 사건은 배심원 없이 단독 판사가 심리합니다. 그러나 중대한 형사 사건들의 경우 배심원이 참석하는 심리가 흔히 일어납니다.

나아가 당사자들은 Arbitration Act 1996 를 통하여 법원의 간섭 없이 중재를 통하여 분쟁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국제상사중재모델법(UNCITRAL)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 의정서 및 협약이 뉴질랜드 내에서 유효하게 해 줍니다. 나아가 뉴질랜드는 외국 중재판정 의 인정과 집행에 관한 New York Convention 서명국입니다. 외국 중재판정은 뉴질랜드에서 인정되고 집행 가능합니다.

환경 및 자원 관리

Resource Management Act

뉴질랜드 환경법을 구성하는 주요 법률로 Resource Management Act 1991 이 있습니다. 이 법률은 자연자원 및 물리적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라는 광범위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관리란 사람과 지역사회에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안녕을 도모하고 아래와 같이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자연자원 및 물리적 자원의 사용, 개발 및 보호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법률 제 5(2)장(Section 5(2))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ㄱ) 예측 가능한 미래 세대의 필요를 위하여 (광물을 제외한) 자연자원 및 물리적 자원의 잠재성을 지속;

(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공기, 물, 토지 및 생태계를 보호; 및

(ㄷ)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방지하거나, 치료하거나 완화시키는 일.

실제로 지속가능한 관리란 첫째로 기획서 작성, 그리고 자원활용승인(Resource Consent)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하여 달성 가능합니다.

기획서

기획서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 순서는 그 중요성에 따른 것입니다.

(ㄱ) 국가정책진술서(national policy statement);

(ㄴ) 지역정책진술서(regional policy statement);

(ㄷ) 지역기획서(regional plan); 및

(ㄹ) 구역기획서(district plan).

Resource Management Act 는 이 같은 기획서 작성을 위하여 자문 및 지역사회의 참여를 가능하게 해 주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원활용승인

지역기획서 및 지구기획서는 그룹 활동을 허용된 활동, 통제된 활동, 한정된 재량에 의한 활동, 재량에 의한 활동 및 비(非)준수 활동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원활용승인은 금지된 활동(prohibited activities)에 대하여 부여되지 않습니다. 각 자원활용승인 신청서에는 관련 제안이 환경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평가, 즉 관련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그 성질과 복잡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원활용승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승인을 하는 기관은 관련 활동을 허용할 경우 환경에 미칠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효과와 승인 여부 결과가 관련 기획서상의 정책 규정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춥니다.

Resource Management Act 의 특징으로 의사결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지금까지 뉴질랜드 정부는 환경 관리에 관한 결정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들이 최상의 결정을 내린다는 냉철한 접근방법을 따라 왔습니다. 특정 상황의 경우, 가령,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 제안이 이루어질 경우, 중앙정부는 개입을 하여 전화참가 과정(call-in process)을 통하여, 또는 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 를 통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Resource Management Act 가 존재한 이래로 이 법률은 여러 차례 수정되어 왔으며, 이를 통하여 기획서 작성 및 승인 규정을 간소화 되었습니다. 법률상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Resource Management Act 는 계속해서 그 입지가 튼튼하며 앞으로도 크게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변화 및 배출권 거래 제도

뉴질랜드는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 년 수준으로 줄이고자 2008-2012 1 차 결의기간 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배출권거래제도(ETS)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뉴질랜드가 따르는 방법입니다. 2013 년 이후로 배출권 감소를 위한 국제적인 합의가 없으나, 현 뉴질랜드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도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배출권거래제도 참가자들은 그들이 생산해 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니터하고 그에 대하여 보고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지기(accounting)”란 생산된 배출량에 비례하는 “배출권(unit)”를 구입하고 내놓아야 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1 배출권(unit)이란 대기중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1 톤을 의미).

배출권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은 온실가스 배출자로 하여금 오염물질을 덜 발생시키는 기술을 채택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역할을 합니다. 위 비용은 대부분 소비자들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많은 경우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참여”가 의무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소를 “포착”하는 행위(가령, 나무심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배출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배출량 제거” 활동을 통하여 배출권거래제도에 참여할지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참여를 통하여 참여자들은 발생한 배출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부 계정상 참여자의 이름으로 보유된 배출권과 그 계정 안팎으로 이전되는 배출권은 모두 기록됩니다. 참여자의 배출권거래제도 계정에 대하여 PPSR 에 담보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은 (특정 요건에 따라) 국내 시장과 더불어 국제적으로 거래될 수 있습니다. 탄소 가격(즉, 배출권의 평균 가격)은 수급 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Climate Change Response Act 2002 는 배출권거래제도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정도의 처벌(형사기소 및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위법행위는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이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참여가 의무인 업계에 관여하게 되는 경우 배출권거래제도 의무사항을 이해하여 무심코 Climate Change Response Act 를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배출권거래제도는 (다른 관할권 내의 계획들과 달리) “모든 분야, 모든 배출가스(all sectors, all gases)”에 적용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각 부문이 배출권거래제도에 참여하는 시기는 시차상 차이가 있습니다.

부문	자발적 보고 Voluntary Reporting	의무적 보고 Mandatory Reporting	전제 의무사항 (배출권 제출) Full Obligations (surrender units)
임업 Forestry			2008. 1. 1.
액체화석연료 Liquid Fossil Fuel		2010. 1. 1.	2010. 1. 1.
정지형 에너지 Stationary Energy		2010. 1. 1.	2010. 1. 1.
산업 과정 Industrial processes		2010. 1. 1.	2010. 1. 1.
합성 가스 Synthetic gases	2011. 1. 1.	2012. 1. 1.	2013. 1. 1.
폐기물 Waste	2011. 1. 1.	2012. 1. 1.	2013. 1. 1.
농업 Agriculture	2011. 1. 1.	2012. 1. 1.	2015. 1. 1.

출처

Ministry of Justice:

www.justice.govt.nz

Auckland District Law Society:

www.adls.org.nz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New Zealand:

www.iponz.govt.nz

Commerce Department:

www.comcom.govt.nz

Companies Office:

www.companies.govt.nz